

"2020년 드림스드림 정기총회 & 2021 Dreaming Volcano"

2021. 01. 21

드림스드림(Dreams Dream)



2020년도 드림스드림 정기총회

목 차

1. 정기총회 개최공고

- 1) 정기총회 개최공고문

2. 정기총회 진행순서

- 1) 사회자
- 2) 개회전 성원보고
- 3) 개회선언
- 4) 인사말
- 5) 2020년도 사업경과보고 및 활동현황
- 6) 2021년도 사업계획(안)보고
- 7)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
- 8) 2021년도 회계예산(안)보고
- 9) 총회안건심의
제1호 안건. 정관변경 승인 요청의 건,
제2호 안건. 운영이사, 감사 사임 및 취임 건
제3호 안건. 2021년도 예.결산 승인 및 집행의 건
- 10) 투표결과 보고
- 11) 폐회선언

1-1 정기총회 개최공고

2020년 정기총회 개최 공고

드림스드림 정관 제16조 2항에 의거 2020년 드림스드림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공고하며, 모든 회원에게는 무선, 문자, SNS 등을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자 : 2021년 01월 21일(목요일) 오후 6:00-9:30

나. 장 소 : (주)티엠디교육그룹(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26 유노피스빌딩)
Zoom(6:30-7:00: 1부 정기총회 안건처리, Zoom 링크주소는 추후발송)
유튜브 김브라이언TV(7:00-9:30: 2부 행사) <https://youtu.be/bE3NpfS5OdQ>
(코로나로 4인 이하로 행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안 건 : 제1호 안건. 정관변경 승인 요청의 건
제2호 안건. 운영이사.감사 사임 및 취임건
제3호 안건. 2021년도 예.결산 승인 및 집행의 건

라. 참석대상 : 드림스드림 모든 회원
※ 단, 대리인은 회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성년자(2002년 01월 21일 이전 출생자)에 한 함(대리인이라는 확인이 사전에 되어야 함)

마. 참고사항 :

- ① 코로나로 Zoom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기에 본명으로 이름을 바꿔주셔야 하고 안건 표결시 찬성여부에 대해서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할 예정이기에 표결시 화면을 켜주셔야 함
- ②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총회 개최 전일(2021.01.20.오후06:00)까지 통지 해드린 정기총회 자료를 참고하시어 '온라인서면결의서'의 각 항목에 체크후 서명 또는 날인 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연 락 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9, 4층 1호(삼성동, 동신빌딩)
TEL : 070-7500-3623 E-mail: dreamsdream7@gmail.com

2021 년 01월 06일

드림스드림(Dreams Dream)



2-5-1. 2020년도 사업경과보고

2020년도 사업진행현황	
<p>완공: 21개 학교(누계 51개)</p> <p>18호 인도 자르칸트 라우다학교 22호 인도네시아 숨바 레다메따학교 23호 탄자니아 음지니학교 26호 미얀마 양곤 탕다빙학교 32호 에스와티니 망가야네학교 36호 캄보디아 트나웃 크뿌어학교 37호 마다가스카르 이블루이나학교 41호 에티오피아 메자학교 43호 말라위 브윈디학교 48호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라마학교 50호 캄보디아 깡뽕치낭 기술학교 51호 남아공 세술루 파레이스학교 52호 시에라리온 마사바나학교 54호 인도네시아 숨바 웨에위뚜학교 55호 탄자니아 잔지바르 키디음니학교 58호 카보베르데 리보네구아학교 59호 인도네시아 숨바 시카학교 62호 에티오피아 관과학교 69호 짐바브웨 치사라사라학교 70호 마다가스카르 안자라수아학교 73호 마다가스카르 안드라누메나학교</p>	<p>공사중인 학교: 30개 학교</p> <p>27호 우간다 부시아 장애아동학교 31호 방글라데시 크리스노골학교 40호 레바논 자흘레 청소년직업학교 42호 차드 가갈학교 44호 케냐 말린디학교 45호 필리핀 까비떼 마라곤돈학교 46호 볼리비아 코참밤바 아브라학교 47호 파키스탄 카라치 지아까로니에학교 49호 차드 바아일리에학교 53호 짐바브웨 몬도르학교 56호 우간다 도요로학교 57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가야학교 60호 레바논 자흘레 시리아난민 남자 청소년 직업학교 61호 시에라리온 코소타운학교 63호 콜롬비아 리오차아학교 64호 인도 마니푸르주 세나파티학교 65호 미얀마 양곤 가딧학교 66호 에티오피아 까르짜학교 67호 시에라리온 마포바학교 68호 남아공 프로모사학교 71호 라이베리아 자와제이학교 72호 캄보디아 트나웃 크뿌어 다니엘학교 74호 짐바브웨 마꼬사학교 75호 차드 은담학교 76호 캄보디아 스베이링 종합기술학교 77호 에티오피아 관과 아바야학교 78호 캄보디아 깡뽕치낭 정보기술학교 80호 레바논 시리아난민 여학교 95호 토고 시이메학교 136호 마다가스카르 포갑 나나레나학교</p>

2020년도 학교 짓기 승인 결과: 91개 학교(18억 1500만원)

- 63호: 2020.02.13 콜롬비아 리오아차 학교결정(2천만원)
- 64호: 2020.02.13 인도 마니푸르주 세나파티 학교결정(2천만원)
- 65호: 2020.02.13 미얀마 양곤 가딧 학교(2천만원)
- 66호: 2020.02.13 에티오피아 까르짜 학교결정(2천만원)
- 67호: 2020.02.13 시에라리온 마포바 학교결정(2천만원)
- 68호: 2020.02.13 남아공 프로모사 학교결정(2천만원)
- 69호: 2020.03.12 짐바브웨 치사라사라 학교결정(2천만원)
- 70호: 2020.03.12 마다가스카르 안자라수아 학교결정(2천만원)
- 71호: 2020.05.14 라이베리아 자와제이 학교결정(2천만원)
- 72호: 2020.05.14 캄보디아 트나웃 크뿌어 다니엘 학교결정(2천만원)
- 73호: 2020.05.14 마다가스카르 안드라누메나 학교결정(2천만원)
- 74호: 2020.05.14 짐바브웨 마꼬사 학교결정(2천만원)
- 75호: 2020.05.14 차드 은담 학교결정(2천만원)
- 76호: 2020.05.14 캄보디아 스베이링 종합기술학교결정(2천만원)
- 77호: 2020.05.14 에티오피아 관과 아바야 학교결정(2천만원)
- 78호: 2020.05.14 캄보디아 깜뽕치난 정보기술학교결정(한화 2천만원)
- 79호: 2020.05.14 차드 부달박아라 학교결정(2천만원)
- 80호: 2020.05.14 레바논 시리아난민 여학교결정(2천만원)
- 81호: 2020.06.11 콜롬비아 리오아차 찰레 학교결정(2천만원)
- 82호: 2020.06.11 미얀마 모비 학교결정(한화 2천만원)
- 83호: 2020.06.11 방글라데시 볼롭뿔 학교결정(2천만원)
- 84호: 2020.06.11 말라위 치몸보 학교결정(2천만원)
- 85호: 2020.06.11 말리 바마코 학교결정(2천만원)
- 86호 2020.07.09 시에라리온 마예리마 학교결정(2천만원)
- 87호 2020.07.09 에스와티니 에쿠제니 기술학교결정(2천만원)
- 88호 2020.07.09 인도네시아 동숨바 SMP PGRI 중학교결정(2천만원)
- 89호 2020.07.09 세네갈 푼준 호렙학교결정(2천만원)
- 90호 2020.07.09 탄자니아 참베와 학교결정(2천만원)
- 91호 2020.07.09 인도네시아 서숨바 SDTK PNIEL 초등학교결정(2천만원)
- 92호 2020.08.20 탄자니아 아루샤 세렐라 아마니 학교결정(2천만원)
- 93호 2020.08.20 에스와티니 에줄위니 히니학교결정(2천만원)
- 94호 2020.08.20 에스와티니 므신다 학교결정(2천만원)
- 95호 2020.08.20 토고 시이메 학교결정(2천만원)

2020년도 학교 짓기 승인 결과: 91개 학교(18억 1500만원)

- 96호 2020.08.20 토고 노트세 학교결정(2천만원)
- 97호 2020.08.20 토고 아탁파메 학교결정(2천만원)
- 98호 2020.08.20 코트디부아르 부암뽀 학교결정(2천만원)
- 99호 2020.08.20 우간다 부이사 장애인 직업재활학교결정(2천만원)
- 100호 2020.08.20 레바논 자흘레 시리아난민 정보기술학교결정(2천만원)
- 101호 2020.09.10 에스와티니 마세트제니 학교결정(2천만원)
- 102호 2020.09.10 에스와티니 루베 학교결정(2천만원)
- 103호 2020.09.10 에스와티니 드부드부시니 학교결정(2천만원)
- 104호 2020.09.10 에스와티니 안티오크 학교결정(2천만원)
- 105호 2020.09.10 에스와티니 엔톤도지 학교결정(2천만원)
- 106호 2020.09.10 에스와티니 므바야 학교결정(2천만원)
- 107호 2020.09.10 키르키즈스탄 게스5 학교결정(2천만원)
- 108호 2020.09.10 모잠비크 시모이우 학교결정(2천만원)
- 109호 2020.09.10 우간다 나무사레 학교결정(2천만원)
- 110호 2020.09.10 콜롬비아 칼레 양계 학교결정(2천만원)
- 111호 2020.09.10 캄보디아 트모방 농업기술 학교결정(2천만원)
- 112호 2020.09.10 몽골 허스 오양가 학교결정(2천만원)
- 113호 2020.09.10 탄자니아 겐디 학교결정(2천만원)
- 114호 2020.09.10 탄자니아 마구구2 학교결정(2천만원)
- 115호 2020.09.10 탄자니아 날 학교결정(2천만원)
- 116호 2020.10.08 콜롬비아 메르까도 학교결정(2천만원)
- 117호 2020.10.08 콜롬비아 뿔라야 학교결정(2천만원)
- 118호 2020.10.08 콜롬비아 인떼르노 학교결정(2천만원)
- 119호 2020.10.08 캄보디아 찐력 솔로몬 학교결정(2천만원)
- 120호 2020.10.08 콜롬비아 마나우레 학교결정(2천만원)
- 121호 2020.10.08 말라위 분다 학교결정(2천만원)
- 122호 2020.10.08 말라위 분다 정보기술학교결정(2천만원)
- 123호 2020.10.08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그레이스 학교결정(2천만원)
- 124호 2020.10.08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청소년직업학교결정(2천만원)
- 125호 2020.10.08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초등학교결정(2천만원)
- 126호 2020.10.08 탄자니아 엔키카렛 학교결정(2천만원)
- 127호 2020.10.08 탄자니아 잔지바르 정보기술학교결정(2천만원)
- 128호 2020.10.08 탄자니아 잔비바르 에덴 중고등학교결정(2천만원)

2020년도 학교 짓기 승인 결과: 91개 학교(18억 1500만원)

- 129호 2020.10.08 탄자니아 루분고 산림농업중고등학교결정(2천만원)
- 130호 2020.10.08 캄보디아 스베이링 스마트헬쓰스쿨결정(2천만원)
- 131호 2020.10.08 베네수엘라 줄리아 난민학교결정(2천만원)
- 132호 2020.10.08 콜롬비아 인페르노 무헤레스 학교결정(2천만원)
- 133호 2020.10.08 콜롬비아 비야델수르 난민학교(2천만원)
- 134호 2020.11.09 남아공 은까벨레 학교결정(2천만원)
- 135호 2020.11.09 콜롬비아 리오하차 정보기술학교결정(2천만원)
- 136호 2020.11.09 마다가스카르 포갑 나나레나 학교결정(1500만원)
- 137호 2020.11.09 탄자니아 바가모요 학교결정(2천만원)
- 138호 2020.12.10 마다가스카르 베다니 정보기술학교결정(2천만원)
- 139호 2020.12.10 마다가스카르 무라누라 스마트팜스쿨결정(2천만원)
- 140호 2020.12.10 마다가스카르 암부히치엘루카 학교결정(2천만원)
- 141호 2020.12.10 남아공 모팔로 학교결정(2천만원)
- 142호 2020.12.10 우간다 로코메부아미나 학교결정(2천만원)
- 143호 2020.12.10 우간다 아빔아미나 학교결정(2천만원)
- 144호 2020.12.10 우간다 우수크아미나 학교결정(2천만원)
- 145호 2020.12.10 탄자니아 차르데와 학교결정(2천만원)
- 146호 2020.12.10 탄자니아 마주치 학교결정(2천만원)
- 147호 2020.12.10 탄자니아 제제에이 학교결정(2천만원)
- 148호 2020.12.31 탄자니아 마템베 학교결정(2천만원)
- 149호 2020.12.31 탄자니아 마씨가티 학교결정(2천만원)
- 150호 2020.12.31 탄자니아 키바하 축산학교결정(2천만원)
- 151호 2020.12.31 바누아투 에타스 학교결정(2천만원)
- 152호 2020.12.31 탄자니아 나망가 마사이학교결정(2천만원)
- 153호 2020.12.31 르완다 루리바 학교결정(2천만원)

2-5-2. 2020년도 활동현황

2020년도 주요 활동 현황

1. 정기이사회 (11회)

이사회에서 63호 ~153호 91개 학교 짓기 선정(예산: 18억 1500만원)

(2월 13일, 3월 12일, 5월 14일, 6월 11일, 7월 09일, 8월 13일, 9월 10일, 10월 08일, 11월 12일, 12월 10일, 12월 31일)

2. 정기모임 (11회)

- 정기모임에서 해외학교 짓기 브리핑 및 학교 운영현황 점검(8월부터 Zoom으로 진행)

- 2월 20일, 3월 19일, 4월 16일, 5월 21일, 6월 18일, 7월 16일, 8월 20일, 9월 17일, 10월 15일, 11월 19일, 12월 17일

3. 글로벌타이거팀 발족 및 미팅

- 1회 캠프: 8월 8일

- 온라인 Zoom 미팅: 10월 09일, 10월 23일, 11월 06일, 11월 20일, 12월 18일

- 2회 캠프: 12월 05일

4. MOU 체결 및 홍보대사 위촉

MOU 체결

- 01월 21일 LTMC(대표 유인자)

- 04월 09일 WTIT(이사장 김정중), (주)플러스코프(대표 김인지), (사)새길과새일(대표 최종원)

- 08월 14일 탄자니아 적정기술거점센터(센터장 이협승), E3empower(대표 이지영)

- 10월 06일 (주)쉐어라이트(대표 박은현)

홍보대사 위촉: 2호 김브라이언(05월 21일), 3호 강찬(11월 12일)

5. 홍보

- 국민일보 드림스드림 소개

- 코리아타운뉴스: 미국 달라스 67호 시에라리온 모금활동 소개

- 크리스천 타임스: 시에라리온 코소타운 학교 후원자 소개

- 미국 GBC Today 인터뷰

- 2020 TW 글로벌리더십 서밋 강의

2020 글로벌타이거팀: 만방에 만개 학교 짓기/운영을 위한 전략.실행팀

1. 구성

- 1) 스마트 유치원: 팀장 박용옥
- 2) 스마트 초등학교: 팀장 박정애
- 3) 스마트 중고등학교: 팀장 조민율, 부팀장 윤종성
- 4) 스마트 장애인학교: 팀장 김주윤, 부팀장 임정택 (자문: 박민수)
- 5) 스마트 정보기술학교: 팀장 이태규, 부팀장: 김세종, 정데이빛, 정원혁 (자문: 이지영)
- 6) 스마트 메이커스쿨: 팀장 고봉익, 부팀장 김진희 (자문: 이협승)
- 7) 스마트 팜스쿨: 팀장 김성일 (자문: 강동진, 김인식)
- 8) 스마트 헬스뷰티스쿨: 팀장 최종원
- 9) 스마트 미디어아트스쿨: 팀장 오혁 부팀장: 박경배, 안찬용 (자문: 김영선)
- 10) 스마트 푸드베이커리스쿨: 팀장 양창국
- 11) 스마트 건축스쿨: 팀장 최수혁, 부팀장 김호창
- 12) 스마트 교사리더십스쿨: 팀장 한건수, 부팀장 김은주
- 13) 스마트 적정기술스쿨: 팀장 이승언
- 14) 스마트 패밀리파이낸싱스쿨 팀장 이동화, 부팀장 이수정

2. 2020년: 글로벌타이거팀의 나아갈 방향 확정

- 1) 2021년까지 14개 스마트 스쿨별 코어모델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 2) 드림스드림은 학교짓기와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스쿨을 운영하여 마을/도시/국가의 변화를 주도한다.



2-6. 2021년도 사업계획(안) 보고

2021년도 사업 방향 및 세부계획	
주요 방향	1. 180개 학교 짓기 심의승인(153~333호)
	2. 정기후원자를 확대하여 153호 학교 짓기까지 후원금 모금(70개 학교)
	3. 재능기부 확대와 역할분담을 통해 100% 재능기부 활성화
	4. 국내와 해외지부 활성화 및 글로벌 운동으로 확산
	5. 만방에 만 개 스마트스쿨을 짓고 잘 운영을 하기 위한 코어모델 만들기
세부 계획	1) 1) 기존 학교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관련 단체들과 동역 2) 신규지역에 대한 학교 짓기 및 기존 학교들을 드림스드림 벨트로 형성
	2) 1) 다양한 계층 동참을 위한 소액 정기후원자 모집
	3) 1) 재능기부 분야 확대 및 역할분담을 통한 재능기부 동참 활성화 2)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연구
	4) 1) 본부와 국내외 지부와 지속적인 의견 및 정보공유 2) 국내외 권역별/도시별 대표를 세우고 모임 활성화
	5) 1) 정기적인 글로벌타이거팀 미팅을 통해 14개 스마트 스쿨의 코어모델 만들기 2) 코어모델 학교들을 세워서 운영하기

2-7.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

2020년도 결산세부내역서

1. 세 입

(기간: 2020.01.01. ~12.31, 단위 : 원)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비고
회비			
후원금	702,321,310	후원자를 통한 후원금 모금	
후원경품	2,560,000	(주)위담 드림스드림 캠프 경품 기증	
보조금			
잡수익	48,357	은행 이자수입	
2019년 이월금	70,088,445		
계	775,018,112		

2. 세 출

(기간: 2020.01.01. ~12.31, 단위 : 원)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50호 캄보디아 깜뽕치낭 기술학교	20,000,000	2020.01.08(수취자: 김영선)
46호 볼리비아 코참밤바 아브라	20,000,500	2020.01.17(이생우)
62호 에티오피아 관과	20,000,500	2020.01.20(정순자)
43호 말라위 브윈디	20,000,500	2020.01.21(최우영)
47호 파키스탄 카라치 지아까로니에	20,000,500	2020.02.05(유정숙)
26호 미얀마 양곤 탕다빙	20,000,500	2020.02.05(정훈채)
48호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라마	20,000,000	2020.02.05(박성조)
56호 우간다 도요로	20,000,500	2020.02.05(송현호)
55호 탄자니아 잔지바르 키디움니	20,000,500	2020.02.05(송규영)
51호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솔루 파레이스	20,000,500	2020.02.06(김주영)
53호 짐바브웨 몬도르	20,000,500	2020.02.06(정인영)
58호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리보네구	20,000,500	2020.02.06(조연섭)
49호 차드 바아일리에	20,000,500	2020.02.06(김영섭)
52호 시에라리온 마사바나	20,000,500	2020.02.10(배근환)
54호 인도네시아 숨바 웨에위뚜	20,000,000	2020.03.17(김성혜)
63호 콜롬비아 리오아차	20,000,500	2020.03.27(박재현)
59호 인도네시아 숨바 시카	20,000,500	2020.04.13(함경재)
70호 마다가스카르 안자라수아	20,000,500	2020.06.16(조용문)
73호 마다가스카르 안드라누메나	20,000,500	2020.06.16(조용문)
64호 인도 마니푸르주 세나파티	20,000,500	2020.06.17(김유나)
80호 레바논 시리아난민 여학교	20,000,500	2020.07.14(김영화)
65호 미얀마 양곤 가딧	20,000,500	2020.08.14(정훈채)
78호 캄보디아 깜뽕치낭 정보기술학교	20,000,000	2020.09.08(김영선)
61호 시에라리온 코소타운	20,000,500	2020.09.14(이순복)
66호 에티오피아 까르짜	20,000,500	2020.09.16(정순자)
69호 짐바브웨 치사라사라	20,000,500	2020.10.05(정인영)
68호 남아공 프로모사	20,000,500	2020.10.16(오송학)
71호 라이베리아 자와제이	20,000,500	2020.10.19(엄진원)
72호 캄보디아 트나웃크뿌어 다니엘	20,000,500	2020.10.26(정진영)
136호 마다가스카르 포갑 나나레나학교	15,000,500	2020.11.10(조용문)
95호 토고 시이메	19,999,991	2020.12.01(AMOS KT)
75호 차드 은담	20,000,500	2020.12.01(박근선)
74호 짐바브웨 마꼬사	20,000,500	2020.12.01(정인영)
67호 시에라리온 마포바	20,000,500	2020.12.04(배근환)
77호 에티오피아 관과 아바야	20,000,500	2020.12.14(정순자)
76호 캄보디아 스베이링 종합기술학교	20,000,000	2020.12.22(김영선)
SMS 수수료	21,600	
인증서비용	4,400	
12/5 드림스드림 캠프 경품증정	2,560,000	
이포넷(체리) 후원금모금 위탁수수료-78호 캄보디아 정보기술학교 기자재	153,605	
이포넷(체리) 후원금모금 위탁수수료-87호 에스와티니 정보기술학교 기자재	36,268	
2020년 이월금액	57,227,248	
계	775,018,112	

2020년도 수지결산서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회 비			① 인건비		
② 후원금		702,321,310	② 운 영 경 비	12/5 드림스드림 캠프 경 품증정	2,560,000
③ 후원금품		2,560,000	③ 사업비	학교짓기 지출	715,014,991
④ 보조금	①			이포넷(체리)후원금모금 위 탁수수료-78호 캄보디아 정보기술학교 기자재	153,605
	②			이포넷(체리)후원금모금 위 탁수수료-87호 에스와티니 정보기술학교 기자재	36,268
⑤ 수익사업				SMS 수수료	21,600
⑥ 기타수입	은행 이자수입	48,357		인증서비용	4,400
⑦ 전년도 이월액		70,088,445			
⑧ 차입금					
			④ 차년도 이월액		57,227,248
합 계		775,018,112	합 계		775,018,112

2-8. 2021년도 회계예산(안)보고

1. 수 입

목록	예산액(원)	산출내역
회비	0	
후원금	1,600,000,000	
2020년이월금	57,227,248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계	1,657,227,248	

2. 지 출

목록	예산액(원)	산출내역
학교 짓기 지출	1,400,000,000	2021.12.31.일 기준으로 70개 학교 짓기 지출
기타지출	157,227,248	스마트 스쿨 관련 예산
2021년이월금	100,000,000	
계	1,657,227,248	

2-9. 총회안건심의

(제1호 안건: 정관변경 승인 요청의 건)

1. 안건상정

제1호 안건 (정관변경 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안사유

가난한 나라에 100개의 학교를 짓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부분을 넘어 학교가 없는 국내외 지역에 10,000개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고 지역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드림스드림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드림스드림 정관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2항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 총회를 통하여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3. 근거

드림스드림 정관 제18조, 제19조

4. 의결사항

정관변경 승인 요청의 건을 의결합니다.

(* 2020년 정기총회 정관 변경할 내용 및 정관 참조)

(제2호 안건: 운영이사, 감사 사임 및 선임의 건)

1. 안건상정

제2호 안건 (운영이사, 감사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안사유

운영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드림스드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 결산, 사업계획의 직무 등을 함께 논의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드림스드림 업무의 부족함 없이 잘 진행하기 위해 운영이사 와 감사의 사임 및 선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근거

드림스드림 정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4. 의결사항

운영이사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의결합니다.

구 분	사 임	선 임
성 명	이주호	오혁
생년월일	790212	750108

감사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의결합니다.

구 분	사 임	선 임
성 명	양창국	이은주
생년월일	680810	710304

(제3호 안건: 2021년도 예,결산 승인 및 집행의 건)

1. 안건상정

제3호 안건 (2021년도 예,결산 승인 및 집행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안사유

드림스드림의 목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드림스드림 정관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24조 이사회회의 의결 및 제32조 제33조 예산편성 및 결산, 회계감사의 규정에 의거선 2021년도 예,결산 승인 및 집행을 한 후 임시 또는 정기총회를 통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3. 근거

드림스드림 정관 제18조, 제24조, 제32조, 제33조

4. 의결사항

2021년도 예,결산 승인 및 집행의 건을 의결합니다.

2-10. 투표결과 보고

2-11 폐회선언

<2020년 정기총회 정관 변경할 내용>

기존내용	변경내용
<p>제2조(목적) 이 단체는 학교가 없는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나 지역에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목적) 이 단체는 학교가 없는 국내외 지역에 학교를 짓고 운영하여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고 구호 및 지역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나 지역에 학교건립 관련 업무일체 2. 학교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일체 3. 해외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업무일체 	<p>제4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지역에 학교건립 관련 업무일체 2. 학교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일체 3.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업무일체 4. 구호 및 지역개발 관련 업무일체
<p>제5조(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온라인 가입신청서나 오프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입신청서 필수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p>제5조(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단체의 회원은 온라인 가입신청서나 오프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기본정보를 제공한 사람으로 한다.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p>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 1인 2. 감사 2인(이사회 참석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없다.) 3. 운영이사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이사이며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p>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부대표 7인 이상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운영이사의 호칭이며 부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p>제10조(임원의 선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의 의결권이 임원(회장, 사무총장, 운영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운영이사, 감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운영이사는 사임서 제출 후 권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운영이사 3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시로 선임 하도록 하며 총회에서 의결을 구하도록 한다. 	<p>제10조(임원의 선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대표)은 운영이사 중 2인을 선정 후 제비뽑기로 최종 1인을 선임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이 있는 임원(회장, 부회장, 운영이사)과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운영이사, 감사는 임기 만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운영이사는 사임서 제출 후 권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임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운영이사 3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시로 선임하도록 하며 총회에서 의결을 구하도록 한다.

기존내용	변경내용
<p>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이사(회장 제외)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후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단,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이사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p>	<p>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이사(회장 제외)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후 총회의 추인 또는 의결을 통하여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단,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이사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p>
<p>제14조(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에서 임명한 자) 1.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대표가 된다. 2. 의결권이 있는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사무총장: 회장과 협의하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결정들을 하며 사무국에 업무를 부과한다. -운영이사(사무총장 제외): 이사회에 참여하여 단체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결산·사업계획을 집행한다. -IT온라인이사: 온라인을 잘 활용하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p>	<p>제14조(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에서 임명한 자) 1.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대표가 된다. 2. 의결권이 있는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부회장: 회장과 협의하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결정들을 하며 사무국에 업무를 부과한다. -운영이사: 이사회에 참여하여 단체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결산·사업계획을 집행한다. -IT온라인이사: IT기술을 잘 활용하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p>
<p>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할 경우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 및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 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참석불가사유와 안건내용에 의사표시를 하여 총회 1일전까지 단체에 도착 되도록 [인편, 우편, fax, 메일, 온라인 서면결의양식, 카카오톡 서면결의(화면캡처보관) 등]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할 경우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 및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 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참석불가사유와 안건내용에 의사표시를 하여 총회 1일전까지 단체에 도착 되도록 [인편, 우편, fax, 메일, 온라인 서면결의양식, 카카오톡 서면결의(화면 캡처 보관) 등] 제출하여야 한다. 4.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 시 안건에 찬성하는 녹화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한다.</p>
<p>제2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운영이사(회장, 사무총장 포함하여 7인 이상)와 감사로 구성한다.</p>	<p>제2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운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하여 7인 이상)와 감사로 구성한다.</p>

드림스드림(Dreams Dream)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드림스드림 (Dreams Dream)”(이하 “단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학교가 없는 국내외 지역에 학교를 짓고 운영하여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고 구호 및 지역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제4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지역에 학교건립 관련 업무일체
2. 학교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일체
3.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업무일체
4. 구호 및 지역개발 관련 업무일체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자로 한다.
2. 단체의 회원은 온라인 가입신청서나 오프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기본정보를 제공한 사람으로 한다.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체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단체에 연락 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탈퇴서를 제출 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후원금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부대표 7인이상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운영이사의 호칭이며 부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4. 감사 2인(이사회 참석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없다.)

제10조(임원의 선임)

1. 회장(대표)은 운영이사 중 2인을 선정한 후 제비뽑기로 최종 1인을 선임한다.
2.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임원(회장, 부회장, 운영이사)과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운영이사, 감사는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운영이사는 사임서 제출 후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임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운영이사 3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시로 선임하도록 하며 총회에서 의결을 구하도록 한다.

제1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의결권이 있는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임서가 회장에게 제출되어 수리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이사(회장 제외)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후 총회의 추천 또는 의결을 통하여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단,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이사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에서 임명한 자)

1.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대표가 된다.
2. 의결권이 있는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부회장: 회장과 협의하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결정들을 하며 사무국에 업무를 부과한다.
 - 운영이사: 이사회에 참여하여 단체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결산.사업계획을 집행한다.
3. 감사는 단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을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하며 감사의 자격은 운영이사나 역할이사를 해본 사람이거나 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4.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회장, 서기, 역할이사, 팀장, 국가별대표(또는 국가별지부장), 지역별대표(또는 지역별지부장)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규정에 적용된다.
 - (1) 운영이사 3인의 동의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2) 사무국장 1인, 서기, 국가별대표, 지역별대표는 1인으로 하며 역할이사와 팀장의 정수는 제한이 없다.
 - (3) 이사회 참석은 가능하나 이사회 의결권은 없으며 단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사무국장, 서기, 역할이사는 의결권이 없으며 이사회 결정사항과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사무국장: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단체의 재정 및 운영을 관리한다.
 - 서기: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록 및 보관을 담당한다.
 - 고문이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고문을 수행한다.
 - 자문이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자문을 수행한다.
 - 기획이사: 단체가 나아갈 방향과 행사들을 기획한다.
 - 사업이사: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실행이사: 단체의 필요한 업무나 행사들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미디어이사: 미디어를 잘 활용하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 IT온라인이사: IT기술을 잘 활용하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 건축이사: 해외학교 건축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홍보이사: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 콘텐츠이사: 해외학교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콘텐츠를 연구하고 보급한다.
 - 국내지부이사: 국내지부를 조직하고 활성화를 시킨다.
 - 글로벌이사: 해외에 학교가 필요한 곳을 발굴하며 해외지부를 활성화 시킨다.
 - 문화이사: 문화, 공연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중보이사: 진행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조율하고 격려한다.
 - 팀장: 각 팀에 맞는 역할이사의 지사를 잘 따른다.
 - 국가별대표(국가별지부장), 지역별대표(지역별지부장):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단체에 대한 활동을 수행한다.
- (4) 사임하고자 할 경우 단체에서 지정한 사임서 양식을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으로 사임이 처리된다.
- (5)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한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해임할 수 있다.
- (6)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후에 특별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 된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01.01~12.31) 기준 당해 연도 12월 01일에서 차후 년도 01월 31일까지 소집하며, 당해 연도 12월에 정기총회 소집될 경우 총회의 회계 처리 보고는 (01.01~11.30)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임시총회 개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며 4일전까지 우편, 유선, 무선, 문자, SNS 등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요구할 수도 있음.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할 경우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 및 출석을 갈음 할 수 있다.
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참석불가사유와 안건내용에 의사표시를 하여 총회 1일전까지 단체에 도착 되도록 [인편, 우편, fax, 메일, 온라인 서면결의양식, 카카오톡 서면결의(화면 캡처 보관) 등] 제출하여야 한다.
4.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 시 안건에 찬성하는 녹화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회의록작성 및 관리)

1. 단체는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단체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회의안건 (4) 의결사항 + 서명부(출석회원)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운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하여 7인 이상)와 감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의결권이 있는 이사의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임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대외적 업무협정(약)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서면결의 허용)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모든 안건을 서면결의로 허용하지는 않으며 특히 정관변경이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회의록작성 및 관리)

1. 단체는 총회,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단체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회의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자 수 (3)회의안건 (4)의결사항 + 서명부(출석회원)

제6장 사업진행

제28조(사업진행기간)

사업진행기간은 구성된 날부터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 후 해산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29조(사업포괄승계)

총회전 단체에서 기 추진되었던 모든 사업 및 업무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0(재원)

1.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 회비(이사회에서 구체적인 회비금액 및 운영규칙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③ 각종 기부금
 - ④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⑤ 기타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드림스드림 홈페이지(www.dreamsdream.org)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1조(회계년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단체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단체의 업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총회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최소 연 1회로 한다.

제34조(임직원의 보수 등)

1.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에 대한 지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유급직원 채용시 이사회를 통한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이사회를 통한 별도의 내부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회장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팀을 둔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기부금 인터넷 공개 및 해산시 규약

제36조(사무국)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드림스드림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9장 보 칙

제37조(단체해산)

1.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8조(다른규정의 적용)

1.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단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 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2.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9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1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 총회에서 해석한다.

제40조(소송관할) 단체와 회원간의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은 단체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도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단체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4조(사업포괄승계)

총회 전 단체에서 기 추진되었던 모든 사업 및 업무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한다.

제5조(사업진행기간)

사업진행기간은 구성된 날부터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 후 해산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1차 정관 개정일: 2016.12.15.

1차 정관 개정일: 2017.12.14.

3차 정관 개정일: 2021.01.21

분야별 100% 재능기부단

※ 드림스드림은 모든 회원의 100% 재능기부로 이루어집니다.

분류	세부분류	이 사	팀 장
이 사 회	운영이사/ 부대표	임채종(대표), 김성일(사무총장), 고봉익, 오혁, 이동화, 이승언, 이지성, 조민율, 최수혁, 한건수	지승희(사무국장) 김도경(서기)
	감사	이은주, 주진용	
역 할 이 사	고문팀	윤승렬, 이태수, 최배진	김재한
	자문팀	강동진, 강두영, 김상배, 김세종, 김인식, 김정중, 박준용, 배진, 배효동, 서원균, 송인선, 여현덕, 윤순재, 이강락, 이명준, 이수정, 이원형, 이인석, 이지영, 이협승, 왕기래, 최종원	한혜영
	기획팀	김경민, 김상민, 박현호, 박홍규, 송진호, 이은희, 이주경, 정태열, 조욱제	주혜영
	사업팀	문경록, 박은현, 박형준, 신동헌, 양창국, 오병엽, 이종수, 정해권	고승일
	실행팀	김정숙, 김성현, 김영민, 문상재, 이주호, 장원태, 조현섭	
	미디어팀	안효진, 유효석, 장영현, 표성일	손하준, 천석용
	IT온라인팀	국현규, 문정민, 이창신, 이태규, 정대환, 정원혁	이준호, 이현우
	건축팀	강달철, 김재경, 김호창, 장재희, 정재선, 조병욱, 황종철	손흥수
	홍보팀	곽능희, 김대형, 송지숙, 여근하, 임준오, 이동운, 한정선	송진영
	마케팅팀	김은주, 김승길, 김용휘, 이서석, 장미순, 차은경	허미정
	콘텐츠팀	고중곤, 김중두, 김주윤, 김준봉, 김진희, 문병욱, 박정애, 배선이, 손정숙, 신만재, 신병준, 윤종성, 이미향, 이지영B, 이진훈, 함정택, 최창욱, 호성숙, 홍제영	이지현B
	국내지부팀	강성민, 계연우(광주광역시), 김형철(대전광역시), 민병수(태백시), 오병구(시흥시), 윤진수(서서울), 이창흡(창원시)	김윤교
	글로벌팀	김영석, 박용욱, 오애란	김동기 황진송
	문화팀	김광현, 박경률, 박경배, 안찬용, 이요셉, 이은경, 이지현A, 장미경	이소영
	중보팀	권은주, 남은숙, 안효순, 정민경, 정진영	강유진
칠드런	인도네시아: 최문정, 최윤정, 시리아: 오미소		
홍보 대사	차유람, 김브라이언, 강찬		

<p>해외지부</p>	<p><미국> 유성현(미국서부대표), 신동철(팀장), 정언주(홍보이사), 실행이사: 김수진, 김철, 박두나, 박은서, 신지연, 황진영, 유문, 유제니, 문화이사: 정명화 자문이사: 박현수, 황보삼열, IT온라인이사: 정데이빗 류호석(샌프란시스코 대표), 김소연(콘텐츠이사), 정연오(샌프란시스코 팀장) 김철호(미국남부대표), 박준희(콜로라도 대표), 이충우(애틀란타 대표), 이근우(미시간 팀장) <캐나다> 원혜진(캐나다 토론토 대표), 실행이사: 김지영, 김선헌 <호주> 윤정호(호주동부대표) <프랑스> 유승희(프랑스 파리) <일본> 후카미 사토시(일본남부대표) <인도> 마틴 아론(인도남부대표) <아르헨티나> 한영천(부에노스아이레스 대표) <아프리카> -Hmarthens Hakizimana(아프리카 대표), 김만호(탄자니아 대표)</p>
--------------------	--

<p>MOU 및 사회공헌협약</p>	<p>소명중고등학교(교장 신병준) ICCMF(대표 이몽식) 갓러브하우스(대표 정진화) 필통미니스트리(대표 김정환) 아프리카리더십(대표 이효근) (주)와이즈디어(대표 표성일) (주)청밀(대표 양창국) Sydney Hosanna(대표 임성식) (주)TMD교육그룹(대표 고봉익) (주)플러스코프(대표 김인지) 지파운데이션(박충관) Beijing A2 Culture Limited Co.Ltd(대표 류호선) 희망도서관책나눔협회(대표 이창준) (주)닷 (대표 김주윤, 성기광) LTMC(대표 유인자) WTIT(이사장 김정중) (주)플러스코프(대표 김인지) (사)새길과새일(대표 최종원) 탄자니아 걱정기술거점센터(센터장 이협승) E3empower(대표 이지영) (주)쉐어라이트(대표 박은현) 고센식품(대표 김신명) (사회공헌협약)</p>
--------------------------------	---

드림스드림 정기후원자 신청서 (제출용)

이름		성별	
핸드폰		이메일	
주소			
월후원 금액(√)	___ 5천원	___ 1만원	___ 2만원
	___ 3만원	___ 4만원	___ 5만원 기타 ___만원
입금일			

우리은행 1005-402-595949 드림스드림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해 주셔야 정기후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문의: 070-7500-3623, dreamsdream.org)
 CMS는 수수료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